중국은행

준법감시인 심의필 : 중은감25-18(2025.08.25)

[유효기간: 2025.09.01-2026.08.31]

기업MMDA예금 상품설명서

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
◈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
◈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기업MMDA예금특약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원화), 외화 예금거래 기본약관(외화),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**됩니다. **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**, **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**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·상 품 명 : 기업MMDA예금

·상품특징 : 예금잔액 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유동성 예금으로 건 별 금리 협의가 가능하고, 예금잔고 범위 내에서 건 별 수시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• 법인(국가기관,지방자치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)
상품유형	• 보통예금
거래방법	• 신규 : 영업점 • 해지 : 영업점
이자지급시기	• 원금 지급시에 지급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
기본이자율	• **시장이율을 반영하여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화별로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대해서 차등금리 적용**	
이자 산출근거	• 예금이자는 별도의 이자지급일 없이 예금지급 시 사전에 은행과 고객이 정한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함. (기업고객의 운용 자금별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금 운용 단위로 이자를 제공)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• 해당없음	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세제혜택	불가능	• 해당없음
위법계약해지권	•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	
자료열람요구권	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•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이내 금융소비자가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,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
계약해지방법	•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	
거래중지	• 3년 이상 새로운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,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 제한 •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	

3 유의 사항

·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· **은행과 약속한 예치기간 전 출금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인출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**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670-5566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